

[별표 1]

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(제2조제1항 관련)

1. 오니류·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
 - 가. 납 또는 그 화합물(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나. 구리 또는 그 화합물(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다. 비소 또는 그 화합물(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.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라. 수은 또는 그 화합물(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.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마.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(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.3밀리그램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바. 6가크롬화합물(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.5밀리그램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사. 시안화합물(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아. 유기인화합물(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자. 테트라클로로에틸렌(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.1밀리그램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차. 트리클로로에틸렌(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.3밀리그램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카. 기름성분(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타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
2. 광채·분진·폐주물사·폐사·폐내화물·도자기조각·소각재, 안정화 또는 고정화처리물 및 폐촉매에 함유된 유해물질
 - 가.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(분진과 소각재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다)
 - 나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